

의약품등 문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2000.2.2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2월 22일

1. 개정이유

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험설 어건 등을 감안할 때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

의약품등 문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

2. 주요 내용

가. 「총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3년의 범위에

서 유효기간 연장(안 제2조)

부 척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판계법령 : 생 약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협동사항 없음

라. 기 타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- 1) 행정예고('23. 1. 31. ~ '23. 2. 20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.
- 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비대상('23.1.30.)

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신·구조물대비표